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5. 12. 9.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 과

의안 제630호로 2025년 11월 7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수요를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사업의 현행화를 통해 복지
혜택의 정당성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 나.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조문 신설(안 제3조제3항)
- 다.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안 제7조)
- 라.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지난 9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영등포구 집행기관 소관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속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원안가결된 바 있음.
-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간제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근무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실제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제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후생복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됨.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집행기관과 동일한 취지에서 구의회 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기존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 정의를 정비함.
 -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사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에 적합한 용어이므로 해당 사항을 반영함.
- 안 제3조제3항(신설)은 의회에 근무하는 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를 통해 의회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복지를 증진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중 「후생복지 운영」 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명절선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설날·추석 각 1회, 총 2회 지급(1인당 5만원, 2명분)을 반영하여 2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는 현재 운영 중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명절(설·추석) 축하 선물 제공(제4항) ▲예방접종비 지원(제8항) 등을 신규로 규정한 것임.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¹⁾에 따라 만 6세 미만 미취학

1)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무상보육 대상이므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제6항)”은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외에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 기간제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통해 근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이미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